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23 호

다. 제출일자 : 2022. 7. 13.

라. 회부일자 : 2022. 7. 14.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함

나. 운용규모 : 496억 46백만원 (당초계획 대비 296억 46백만원 증가)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계	20,000	49,646	29,646
전입금	20,000	49,646	29,646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계	20,000	49,646	29,646
예치금	20,000	49,646	29,646

○ 수입계획 변경

- 전입금 수입 : 29,646백만원 증가 (20,000 → 46,646백만원)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 수입

○ 지출계획 변경

- 예치금 : 29,646백만원 증가 (20,000 → 46,646백만원)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96억 46백만원 수입에 따라 예치금 증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 변경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제11조제2항1)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회전기금’)은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투자재원 마련, 물재생센터 노후시설물 교체 등에 대비한 감가상각비 적립 등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39조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62, 제정 2020.7.16.)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

[표 1] 회전기금 조성재원 및 용도

조성재원	기금용도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등	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 (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함) 2.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용자 및 출자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 2)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회전기금은 지난 2022.3월 200억원을 최초 적립하여 기금 2금고(우리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³⁾하였는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의회가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 당초 운용 규모 200억원에서 296억 46백만원이 증가한 496억 46백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임.

[표 2] 회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내역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계	20,000	49,646	29,646	계	20,000	49,646	29,646
전입금	20,000	49,646	29,646	예치금	20,000	49,646	29,646

-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입금이 296억 46백만원 순증하는데,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함에 따른 것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독립채산제⁴⁾ 및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함에 따라 지난연도 초과세입, 불용액 등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3) □ 기금 운용현황(22년 6월 기준)

- 공금성 정기예금 예치 : 200억원
- 예치기간 : 6개월(3~9월)
- 정기예금 이율 : 연2.1%
- 이자수입 : 월 35백만원(총 210백만 예정)

4) ※ 단일기업 또는 공장·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로, 이 제도는 본질적 조건은 다르지만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도 공기업(公企業)을 중심으로 그 적용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결손(적자)을 세금 등 일반 재원으로 보전하는 일 없이 기업경영의 자주적인 노력과 수지대응(收支對應)에 의한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의도됨.

- 당해연도 추경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전액에 대해 사업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 따라 당해연도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사업이 없더라도 굳이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등 대규모 재원을 요하는 중장기 사업들을 위해서는 사전에 여유자금을 미리 저축해 놓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을 회전기금으로 적립·운용함으로써 하수도 중장기 투자사업비 및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대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로, 물순환안전국은 하수관로 신설 및 유지관리,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의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 1,2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붙임 1〕 참조)하고 있음.
- 다음으로,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상기 전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은행에 예치하기 위한 예치금이 당초 200억원에서 496억 46백만원으로 296억 46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임.

■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

-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 이번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회전기금 전출금 296억 46백만원)으로 재무활동경비가 20% (200억원 → 496억 46백만원, 약 140%)를 넘게 되어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게 된 것임.
- 이처럼 2021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잉여금 중 일부를 본 회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려는 것은 조례 제2조⁵⁾에 따른 회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금회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예비심사에 회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296억 46백만원의 예산 규모가 수정될 경우 본 변경안 역시 수정이 필요한 사안임.
- 한편,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하에서는 높은 이자수입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시금고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 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붙임 1] 연도별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현황

[붙임 2]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붙임 1] 연도별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사업비 지출 총 계>	9,222	8,899	9,162	10,900	12,095	12,373	12,766	11,803	11,951	12,069	111,238
하수관로 계	4,333	4,442	4,497	5,284	5,409	5,315	5,332	5,349	5,395	5,445	50,801
투자사업비	1,823	2,357	2,517	3,216	3,256	3,275	3,280	3,285	3,290	3,295	29,594
유지관리비	2,510	2,085	1,980	2,068	2,153	2,040	2,052	2,064	2,105	2,150	21,207
물재생센터 계	4,889	4,457	4,665	5,616	6,686	7,058	7,434	6,454	6,556	6,624	60,437
투자사업비 소계	653	620	713	1,545	2,493	2,739	2,986	1,872	1,837	1,763	17,221
시설현대화	243	14	20	130	491	491	911	964	1,589	1,550	6,403
총인처리시설	105	302	127	63	335	1,169	1,167	-	-	-	3,268
난지 시설물 환경개선	-	88	104	778	1,360	760	660	660	-	-	4,410
탄천 수처리시설 확충	-	-	-	18	20	-	85	85	85	85	378
차집관로 성능개선	82	58	112	100	124	156	-	-	-	-	632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90	121	150	350	-	-	-	-	-	-	711
슬러지 처리계통 효율화 사업	35	-	100	6	63	63	63	63	63	63	519
스마트 하수처리 공정 인프라구축	-	8	50	50	50	50	50	50	50	15	373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98	29	50	50	50	50	50	50	50	50	527
유지관리비 등 소계	4,236	3,837	3,952	4,071	4,193	4,319	4,448	4,582	4,719	4,861	43,216
유지관리비	1,552	1,069	1,101	1,134	1,168	1,203	1,239	1,276	1,315	1,354	12,412
운영경비	2,684	2,768	2,851	2,937	3,025	3,115	3,209	3,305	3,404	3,506	30,804
<회전기금 적립액> (본예산 5%)	-	468	480	481	518	560	605	606	607	608	4,933

[붙임 2]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5578	시 민			
결재일자	2022. 7. 13.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공개여부	부분공개(5)				07/13
방침번호		협 조			

**-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정책의 제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공개 여부를 " 비공개 "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 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기금 편성 등을 위한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보고

I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동안 추진사항

- '21. 0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 '21. 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정
- '21. 10. 제1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12.)
 - '22년 본예산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00억원** 편성 의결
- '22. 07. 제2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서면회의)
 - '22년 추가경정예산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96억원** 편성 의결

II 제2회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안건개요

- 심의안건 : '22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변경계획(안)
- 심의방법 : 서면회의
- 서면심의 사유
 - 현재 상임위(도안위) 미확정으로 시의원 심의위원 공석으로 인해 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던 중
 - '22년 2차 추경예산에 추가 기금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기금위원회)를 긴급하게 실시해야 함에 따라 서면심으로 추진
- 심의위원 : 총 9명 중 시의원 위원 2명을 제외한 **7명** 심의

□ 변경계획(안) 내용

- 주요내용 : '22년 추가경정예산 기금 추가 편성
- 추가 편성액 : **29,646,005천원**

(단위: 천원)

기금명	'22년 기금액(안)	기 편성 기금액*	추가 편성액(안)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49,646,005	20,000,000	29,646,005

* 2022년 3월 최초 200억원 적립

○ 편성사유

- 하수도 중장기 투자사업비 및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등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자 매년 약 500억원 내외의 기금 적립 필요
 - ※ 종량,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등 향후 중장기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족 예상
-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1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하반기 추가 긴급사업비를 제외한 **296억원**을 기금으로 추가 편성

Ⅲ 심의 결과

□ 심의 의결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전체위원 9명 중 7명 심의 ⇒ 의사정족수 충족
- 심의 및 의결한 위원 7명 전원 원안가결 ⇒ 의결정족수 충족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타의견

- 향후 서울시 대규모 하수도 투자사업을 위한 자금적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적립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판단
- 위원들에게 향후 투자해야할 서울시 대규모 하수도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 있음

Ⅳ 향후 계획

- '21. 7. 13. 재정담당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e호조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변경(안) 내역 입력
- '21. 7.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재정담당관에서 각 기금사항 통합으로 수합하여 제출
- '21. 8. 추가 편성된 기금 296억원 2시금고 적립(예정)

V

행정사항

□ 민간위원 심사수당 지급

○ 서면회의로 참석수당은 미지급하나, 심사수당은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지급예정액 : 금200,000원 (50,000원 × 4명)

※ 물순환안전국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기준(물순환정책과-6010/2020.03.27.)에 의거 심사수당은 안건 2건 이하 검토 기준 1인당 5만원 적용

－ 예산과목 :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물재생계획과), 단위사업)기본경비, 세부사업)기본경비, 목)일반운영비, 세목)사무관리비

- 붙임 1. 제2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서명본) 1부.
3. 위원 심사수당 지급(예정) 내역 1부. 끝.